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10.8(화) 10:00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**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9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농민단체 명칭 변경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농업인단체 명칭 변경(충청북도 생활개선회→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,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→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)에 따른 조항 개정(안 제2조)
- 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다.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5조 등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농업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, 조례 개정은 타당함.